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사별 후 재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1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사별 후 재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4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10 |



## I. 개요

###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416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75조의2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사별 후 재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재혼 시의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sup>1)</sup>(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제75조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br>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br>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br>은 소멸한다.<br>1. (생 략)<br>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br>3. 4. (생 략)<br>② (생 략)<br><u>&lt;신 설&gt;</u>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br>3. 4.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u>제75조의2(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br/>급 특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u> |

1)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 현행 | 개정안                                                                                                                                                                                                                |
|----|--------------------------------------------------------------------------------------------------------------------------------------------------------------------------------------------------------------------|
|    | <p>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중증장애인 또는 25세 미만), 부모(중증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손자녀(중증장애인 또는 19세 미만) 및 조부모(중증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2명 이상이면 균분 지급)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됨.<sup>2)</sup>

### 2)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과양되는 경우 등에 소멸하는데,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도 그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하는바,<sup>3)</sup>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해당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 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4)</sup>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과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 10. 24.>

### 4)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한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sup>5)</sup>

□ 이에 개정안은 사별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된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혼 후 재혼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사별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간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6조제1항<sup>6)</sup>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별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한 현행법 제75조제1항제2호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가지는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 6)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의견이 있고,<sup>7)</sup>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혼인 기간 중 가사와 돌봄 등으로 연금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재혼을 사유로 그 수급권을 영구히 박탈함으로써 가족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의 재산권적 측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음.<sup>8)</sup>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25세 이상 자녀를 배제한 현행법 제73조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유족연금은 결혼이나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로서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제도이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 급부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sup>9)</sup>

□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과 군인연금의 퇴역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7) 이지연, 「사별 후 재혼 금지하는 연금법? [세상에 이런 법이]」, 『시사IN』 제939호, 2025. 9. 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08>>

8) 노한장,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인문사회 21』 14(2), 2023, 75-88면.

9)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전원재판부 결정.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59조제1항제2호) 및 「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29조제1항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법적 성격 및 목적 등이 서로 다른 점,  
② 재혼 시 재혼 상대방으로부터 사적 부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sup>10)</sup>

-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4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혼인 기간 중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여 공무원·군인의 연금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가운데 재혼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역유족연금을 수급할 권리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음.

10)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19헌가3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1헌가28 결정.

< 심판대상조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주요 이유(요약) >

| 구분                | 합헌결정의 주요 이유                                                                                                                                                                                                                                                            |
|-------------------|------------------------------------------------------------------------------------------------------------------------------------------------------------------------------------------------------------------------------------------------------------------------|
| ①<br>분할연금과의<br>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이혼 시 나누는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성격이 큰 급여로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그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데 반하여,</li> <li>○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되는 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은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큰 급여로서 법적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름.</li> </ul> |
| ②<br>사적 부양<br>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으로 새로운 부양 관계를 형성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li> <li>○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유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li> </ul>                                                                                 |
| ③<br>한정된<br>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대상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li> </ul>                                                                                                                       |

□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을 규정한 현행법 제72조 제1항11)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별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 연금액에 관한 특례가 규정된 안 제75조의2제1항 중 ‘수급자’는 현행법 제73조제1항1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참고하여 ‘제72조제1항 각 호의

11)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75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을 어느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부터' 등으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수급권을 계속 보장하려는 내용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유족연금은 망자의 생계를 함께한 유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의 제도로써, 수급권의 형성·종료는 망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입자 사망 시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생계보호를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망인의 배우자가 재혼 시에는 부양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12)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의 수급권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분을 나누어 갖는 재산권적 성격의 급여로서,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되며, 본인의 노령연금액도 전(前)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는 등 유족연금·분할연금은 각각의 목적·취지에 따라 수급 및 중단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혼인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재혼 시에는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고르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우려가 있고,

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 후순위자인 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심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sup>13)</sup> 재혼의 반복 시 유족연금 산정이 어려워지게 되며, 다른 공적연금도 재혼 시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4)</sup>

13)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14) 「공무원연금법」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연금법」

**제32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급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급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 (국민연금공단) 재혼에 대한 인식변화 및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으로 그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재혼한 배우자는 망자와의 신분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부관계에 따른 생계유지 의무가 형성되므로, 망자와의 혼인에 기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재혼 시 망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으로 신분관계가 단절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망자의 유족인 자녀의 생계를 결과적으로 희생하게 되어 유족연금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와도 배치됨.

아울러,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계유지(부양)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분할연금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